

## 칠곡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0. 11. 25.  
산업건설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0. 11. 19. 칠곡군수 제출

나. 회부일자: 2020. 11. 20. 회부

다. 상정일자: 제270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 
(2020. 11. 25. 상정·심사·의결)

### 2. 제출설명의 요지(제출설명자: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)

#### ○ 제출이유

상위법과 불일치하는 사항을 정비하고,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옥외광고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.

#### ○ 주요내용

가. 관련 법령 및 조례 제명 변경에 따른 인용 조항 정비

- 「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」

→ 「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」

(안 제2조제3항)

- 「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」 제3조 및 제23조

→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 제3조 및 제34조

(안 제8조제1항)

나. 상위법 불일치 사항 정비

- 자율관리구역 내 주민협의회 위원장 등 선출 방법 수정(안 제10조제2항)

- 상위법에 근거 없는 과태료 면제사유 삭제(안 제24조제7항)

다.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구체화(안 제15조제1항)

-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

→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

### 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남성태)

#### ○ 본 개정 조례안은

상위법과 불일치하는 사항을 정비하고 업무추진 상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·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

관련 법령 및 조례 제명변경에 따른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주민협의회 구성 방법과 과태료 면제규정을 수정·삭제하였으며,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할 대상을 구체화하였음.

절차의 이행 및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효율적인 옥외광고 업무 추진을 위해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#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#### 5. 토론요지: 특이사항 없음

#### 6. 소수의견: 특이사항 없음

#### 7. 심사결과: [원안가결](#)